

요약

- 장기요양위험에 대한 사적준비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장기요양 발생 가능성과 그 비용, 그리고 공적 장기요양보험의 보장범위 등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은 사적 대비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음
- 장기요양에 대한 공적 보장이 취약한 미국에서는 사적 대비의 중요성이 크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노후 준비 행동은 제한적이었으며(‘장기요양 퍼즐’이라 함), 그 배경에는 장기요양 발생 가능성과 비용을 과소평가하고 공적 제도의 보장 범위를 실제보다 과대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자리했음
- 이에 미국 연방·주정부는 Medicare가 장기요양을 보장한다는 오해를 바로잡고, 사적 대비의 필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정보 제공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이는 보험 가입 등 노후준비행동으로 이어짐
- 우리나라는 공적 장기요양보험이 장기요양의 핵심 재원으로 기능하나, 급격한 고령화 속에서 제도의 도입과 확산이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져, 제도 전반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이해도(Literacy)가 형성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음
-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고령자는 44.6%에 불과하며, 이는 표면적 인지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실제 재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질적 이해 수준은 이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추정됨
- 예컨대, 보건복지부의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나 그 가족조차도 일부는 단기보호급여, 치매전담실, 치매가족휴가제 등 세부 제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 일부 급여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령자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장기요양 위험 및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하고, 관련 정보 생성 및 제공을 통해 장기요양위험에 대한 개인의 합리적 대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다양한 제도적 대응이 논의되는 가운데, 장기요양위험에 대한 사적 대비의 필요성도 한층 중요해지고 있음
 - 수급자 증가와 급여수가 인상으로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2030년 베이비부머의 후기고령층 진입을 고려할 때 향후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 2024년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약 117만 명 중 82%(약 96만 명)가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이며, 베이비부머(1955~1963년 출생)가 2030년부터 후기고령층에 진입하면서 장기요양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대응하여 보험료 인상과 국고보조 확대를 통한 수입 확충, 지출 효율화, 그리고 주택이나 사망보험금 등 개인 자산의 유동화를 통한 노후 활용 방안 등 다양한 접근이 모색되고 있음
 - 공적 보장이 강화되더라도 급여수가 인상에 따라 본인부담금(급여의 20%) 역시 증가하며, 급여 외 서비스 이용에는 추가 비용이 소요되므로 장기요양위험에 대한 사적 대비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함
- 다만 장기요양 위험 및 제도에 대한 인식 왜곡은 사적 대비의 동기를 약화시키며, 미국은 이에 대응하여 연방·주정부 차원의 장기요양 정보 제공 캠페인(Own Your Future)을 전개해 노후준비행동을 촉진함
 - 장기요양의 발생 가능성과 비용은 과소평가되는 반면, 공적 제도의 보장 범위는 실제보다 과대하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인식 왜곡은 개인의 장기요양위험에 대한 사적 대비 동기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본고에서는 미국 사례를 통해 개인의 노후준비에 있어 장기요양 이해도의 중요성을 고찰하고, 기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장기요양 이해도를 개략적으로 살펴본 후, 관련 정보 생성·제공의 필요성을 제기함
 - 우리나라는 장기요양보험이 장기요양의 핵심 재원으로 기능하나, 급격한 고령화 속에서 제도의 도입과 확산이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져, 제도 전반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이해도(Literacy)가 형성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음
 - 개인이 장기요양위험에 대비해 재정적 준비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도의 존재를 인지하는 차원을 넘어 장기요양 발생 가능성과 그 비용, 장기요양보험의 보장 범위와 한계, 그리고 기타 공적 서비스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임

2. 미국 사례: 장기요양에 대한 이해도와 노후준비

- 미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 장기요양 지출이 연방 및 주 재정에 가하는 압박이 심화되면서, 개인 차원의 노후준비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필요성이 대두됨
 - 미국의 공적 장기요양제도는 연방 조세 기반의 Medicare와 연방·주 매칭 재원의 Medicaid로 구성됨
 - 2004년 전미주지사협회(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는 Medicaid 지출이 전체 주 지출의 약 21.9%로,

초·중·고 교육비(21.5%)를 넘어섰으며, 향후 Medicaid가 주 예산을 더욱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함¹⁾

○ 미국은 공적 안전망의 미비로 인해 장기요양 위험 노출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낮는데, 이러한 현상을 장기요양 퍼즐(Long-term Care Puzzle)이라 함

- Medicare는 단기 의료, Medicaid는 빈곤층에 국한되어 보편적 안전망으로서 기능은 미흡함
 - Medicare는 65세 이상 노인 등을 대상으로 최대 100일까지 수술 후 회복과 같은 전문 간호 서비스(Skilled nursing facility care)를 제공할 뿐, 목욕·옷 입기·식사·배변 보조 등 일상생활지원은 보장 대상이 아님
 - Medicaid는 요양시설 서비스를 필수급여로 포함하되, 재가·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는 주(州)마다 범위와 수준이 상이하며, 빈곤층 중심 제도로써 자산을 대부분 소진하기 전까지는 장기요양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65세까지 생존한 미국인의 약 56%가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생애기간 동안 장기요양 평균 비용은 약 137,800달러(한화 약 2억 원)에 이르나, 60세 이상 인구의 장기요양보험 보유율은 10.5%에 불과함²⁾
 - 2004년 기준 전체 장기요양 지출 중 민영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은 4%에 불과하며, 약 1/3은 본인부담으로 충당되었는데, 이는 의료 전반에서 민영보험이 35%를 부담하고 본인부담이 17%에 불과한 것과 대조적임³⁾

○ 장기요양 퍼즐은 경제학자들의 오랜 연구 주제로, 장기요양 위험 및 제도에 대한 인식 미비가 원인으로 지목됨

- 이외에도 공적 보장의 대체효과, 정보 비대칭, 비공식 돌봄 제공 가능성, 상속 동기 등이 원인으로 언급됨
- 장기요양에 대한 정보 부족과 오인은 교육·홍보·캠페인을 통해 비교적 단기간 내 개선 가능한 정책 개입 지점인 반면, 다른 요인들은 개인의 선호나 경제적 제약과 같이 상대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에 해당함

○ 구체적으로, 공적 제도의 보장 범위를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으며, 이러한 인식 왜곡은 노후준비 과정에서 저축이나 보험 가입과 같은 재정적 대응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2007년 미국 21~75세 성인 대상 조사에서 응답자의 40%가 Medicare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요양시설 비용을 부담한다고 믿고 있었으며,⁴⁾ 2011년 조사에서 50세 이상 미국인의 29%가 Medicare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보장한다고 믿고 있음⁵⁾
 - 비교적 최근 조사에서도 65세 이상 응답자의 45%가 장기질환이나 장애 발생 시 Medicare가 요양시설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고됨⁶⁾
- Ayyagari et al.(2025)은 Medicare 등록 시점인 65세에 장기요양보험 가입률이 17.6%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하였으며, 이는 개인이 Medicare 등록 과정에서 Medicare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 하게 되고, 이러한 인식의 교정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가입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함⁷⁾

1) <https://stateline.org/2004/12/16/healthier-budgets-for-states-in-2005/?utm>

2) ASPE(2021), "Long-term Services and Supports for Older Americans: Risks and Financing"

3) Congressional Budget Office(2004), "Financing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4) Raphael, C.(2008), "Long-term Care: Preparing for the Next Generation"

5) Brown, J. R., Goda, G. S. and McGarry, K.(2012), "Long-term Care Insurance Demand Limited by Beliefs about Needs, Concerns about Insurers, and Care Available from Family". *Health Affairs*, 31(6), pp. 1294~1302

6) Hamel, L., and Montero, A.(2023), "The Affordability of Long-term Care and Support Services: Findings from a KFF survey"

- 또한, 장기요양 발생 가능성과 비용에 대한 과소평가가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이는 재정 준비 동기를 약화시킴
 - 2012년 국가건강인터뷰조사(National Health and Interview Survey)에 따르면, 40~65세 성인의 40%만이 장래에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할 가능성을 예상하였으며, 이는 예측치(약 56%)보다 낮음⁸⁾
 - 장기요양 비용에 대한 이해는 잠재적 본인부담 비용에 대비한 재정적 보호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 요소이나, 이에 대한 대중의 이해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음
 - 미국 40~70세 성인의 약 80%는 요양시설 2인실 한 달 평균 비용을 알지 못하였으며, 84.7%는 방문요양보호사 1시간 평균 비용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⁹⁾
- 이에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공적 제도의 보장범위에 대한 낙관적인 인식을 바로잡고, 사적 대비의 필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정보 제공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이는 장기요양보험 가입 등 노후준비행동으로 이어짐
 - 2000~2005년까지의 연구·개발 단계를 거쳐 미국 보건복지부는 24개 주 및 워싱턴 D.C.와 협력하여 Own Your Future 캠페인을 시행하였으며, 1·2차 단계에서는 50~70세 가구원을, 이후 단계에서는 45~65세 가구원을 대상으로 주지사 명의의 안내문을 발송함
 - 동 캠페인은 실제 행동 변화(보험 가입·저축·가족 논의 등)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요양 위험, 비용 규모, 공적 제도의 한계, 사적 준비 수단, 실질적 행동 지침 등의 정보를 제공함
 - Own Your Future 캠페인으로 인해 자산 상위 20% 집단의 장기요양보험 가입률이 4%p(약 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Medicaid 재정 절감 효과는 약 4억 8,300만 달러로 추정됨¹⁰⁾

3. 고령자 등의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도

- 우리나라는 공적 장기요양보험이 장기요양의 핵심 재원으로 기능하나, 급격한 고령화 속에서 제도의 도입과 확산이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져, 제도 전반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이해도가 형성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음
 -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4.6%에 불과함
 - 자기보고식 설문조사에서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주관적 평가에 기반하여 제도의 존재 여부를 아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므로, 실제 재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질적 이해 수준은 이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추정됨
- 구체적으로,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고령자라 하더라도 요양급여 한도, 요양시설 입소 제한 등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며, 공적 보장 범위를 실제 이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7) Ayyagari, P., He, D., Magenheimer, E. B., and Nie, J.(2025), “Do Misperceptions About Medicare Coverage Explain Low Demand For Long-Term Care Insurance?”

8) Henning-Smith, C. and Shippee, T. P.(2015), “Expectations about Future Use of Long-Term Services and Supports Vary by Current Living Arrangement”, *Health Affairs*, 34(1), pp. 39-47

9)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ASPE가 2014년에 시행한 전국 대표 표본조사(Survey of Long-Term Care Awareness and Planning) 결과임; ASPE(2016), “What Do People Know About Long-Term Services And Supports?”

10) Brown, J. H.(2023), “Impact of a Long-Term Care Information Campaign on Insurance Coverage”, *Journal of Health Economics*, 92

- 설문조사 결과, 장기요양 3·4등급 상황에서 응답자의 43.9~61.5%가 재가급여 이용을 전제로 자택 거주를 희망 하였으나, 방문요양의 일일 최대 이용가능시간에 대한 정보를 인지한 이후에는 자택 거주 의향이 일부 감소함¹¹⁾
 - 또한 장기요양 3·4등급 가정 상황에서 응답자의 13.5~26.2%가 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하였으나, 3·4등급은 원칙적으로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없음
- 특히, 장기요양 발생 시 희망 거주 형태가 제도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은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개인의 노후준비에 매우 중요함을 의미함

향후 장기요양 등급별 희망 거주 형태에 대한 설문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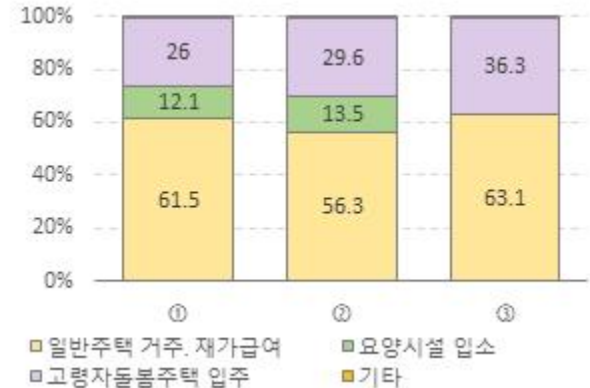
- ① 향후 귀하께서 장기요양 N등급을 받게 된다면, 어디에서 거주하기를 원하십니까?
- ② 귀하께서 장기요양 N등급일 때, 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을 하루에 최대 3시간(1·2등급은 4시간)만 이용할 수 있다면, 어디에서 거주하기를 원하십니까?
- ③ 원칙적으로 장기요양 3·4·5등급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장기요양 3·4·5등급에 해당되어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없다면, 어디에서 거주하기를 원하십니까?

주: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보를 추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응답자에게 순차적으로 제시됨
 자료: 송윤아·정수진(2025), 『보험회사의 노인주거서비스 제공 방안』, 보험연구원

〈그림 1〉 이해도별 장기요양 3등급 상황 시 희망 거주 형태



〈그림 2〉 이해도별 장기요양 4등급 상황 시 희망 거주 형태



주: ①, ②, ③은 위의 설문 문항을 의미하며, '일반주택 거주, 재가급여'는 가족돌봄과 간병인 고용을 포함함

주: ①, ②, ③은 위의 설문 문항을 의미하며, '일반주택 거주, 재가급여'는 가족돌봄과 간병인 고용을 포함함

자료: 송윤아·정수진(2025), 『보험회사의 노인주거서비스 제공 방안』, 보험연구원

○ 또한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나 그 가족조차도 세부 제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 일부 급여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재가급여 이용자 중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한 적이 없는 수급자 가운데 해당 급여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27.8%에 불과함(표 1) 참고)

11) 보험연구원은 2024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적이 없는 65~79세 중산층 고령자 가운데 자산 4억 원 이상을 보유한 1,000명을 대상으로, 주거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함. 본 조사는 성별, 연령, 지역 등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비례할당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전국 65~79세 고령자 집단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응답자의 특성을 통해 일부 경향을 파악하는 참고자료로는 활용이 가능함

- 또한 현재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가족이 치매전담실이나 치매전담 주야간보호급여를 인지한 비율은 각각 41%와 45% 수준이며, 치매가족휴가제에 대한 인지 비율은 26.2%에 그침

〈표 1〉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및 가족의 제도 인지 비율

(단위: %)

단기보호 미이용 재가급여 이용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		
	치매전담실 등	치매전담 주야간보호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27.8	41.3	44.7
			26.2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4. 결론

- 노후준비의 미비는 단순히 금융이해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장기요양 등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낮은 이해도에 기인할 개연성이 있음
 - 생애 중 장기요양의 발생 가능성과 비용을 과소평가하고, 공적 제도의 보장 범위를 실제보다 과대하게 인식하는 등의 인식 왜곡은 개인의 장기요양 대비 재정적 준비 동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고령자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장기요양 이해도를 파악하고, 장기요양 위험 및 제도에 대한 체계적 정보를 생성·제공하여 개인의 합리적 대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장기요양은 고령자에게 중대한 재정적 위험 요인으로, 이에 대한 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발생 가능성, 비용, 이용방식, 공적 보험의 보장 범위 및 한도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함
 - 장기요양에 대한 이해도 제고는 저축 및 보험 가입 등 개인의 합리적 대비를 유도함으로써 공적 지출, 가족 돌봄 부담, 비효율적 서비스 이용, 빈곤 전략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음

〈표 2〉 노후준비 강화를 위한 장기요양 정보 제공 유형

구분	상세 내용
① 위험	• 연령대별 장기요양 발생 가능성, 요양시설 및 재가서비스 이용 가능성
② 비용	• 장기요양 서비스 유형별 비용, 장기요양보험 비급여 항목별 비용 통계 • 인건비·물가 상승을 고려한 중장기 장기요양 비용 전망
③ 제도·재원 구조	•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범위 및 이용 한도 • 본인부담금 구조 및 수준
④ 재정계획 실행	• 민영보험: 가입요건, 보험료 산정 방식, 연령별 보험료 상승 구조, 민영보험의 장단점 • 저축 및 자산 활용: 저축, 퇴직연금, 주택자산, 사망보험금 활용 방법 • 가정 내 계획 절차: 가족과의 대화(돌봄 부담 분담), 법적 준비(위임장, 후견인제도, 상속·유산 대비), 주거환경 조정 • 가족 돌봄 대비: 비공식 돌봄과 공식 돌봄의 차이, 가족부담 완화 제도

주: 미국 Own Your Plan 캠페인에서 사용한 장기요양 계획 패키지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재구성함